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0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북5도” 및 “이북5도민”,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함. (안 제4조)
 - － 이북5도민 망향위로

-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2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
3.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검토와 발취 사항

관계법령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8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제3조(도청의 임시 위치) 이북5도의 임시 사무소는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4조(관장 사무)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등"이라 한다)은 해당 관할지구가 수복될 때까지 주무부장관의 지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조사연구업무
가. 이북5도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의 수집·분석
나. 이북5도등을 수복할 경우에 시행할 각종 정책의 연구
2. 월남(越南)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의 지원 및 관리
가. 이북도민의 실태조사 및 생활안정 지원
나.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의 교류 사업 지원
다. 이북도민의 후세대 육성 및 지원
3.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4. 이북5도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5.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6.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7. 이북도민에 대한 각종 증명 발급업무
8. 그 밖에 이북5도등 및 이북도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도지사) ① 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 ② 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③ 미수복 시·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제6조(행정기구) 이북5도등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이북5도위원회의 설치) 이북5도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이북5도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무를 보조·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 대하여 이북5도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6항 중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 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8조(시·도사무소)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사무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 수반요인 : 이북5도민 망향위로 사업, 황해도민회 교류사업,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이북5도민 지원사업별 매년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망향위로사업	25	25	25	25	25	125
	황해도민회 교류사업	20	20	20	20	20	100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10	10	10	10	10	50
	소계	55	55	55	55	55	275
수입	국비						
	지방비	55	55	55	55	55	275
	소계	55	55	55	55	55	275
총비용		55	55	55	55	55	275

4.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시비	일반회계	55	55	55	55	55	275
	특별회계						
	기금						
합계		55	55	55	55	55	275

5.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성자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장 전무수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이북5도민 망향위로 사업

단위사업명	일정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25,000
설 망향제	2월	○ 내용 :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망향대제 ○ 장소 : 수봉공원(망배단) ○ 대상 : 인천지구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150명	3,000
한식 망향제	5월	○ 내용 :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망향대제 ○ 장소 : 수봉공원(망배단) ○ 대상 : 인천지구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300명	6,000
통일기원 최북단 망향제	6월	○ 내용 :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최북단(고성)망향대제 ○ 장소 : 고성 ○ 대상 : 인천지구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80명	8,000
추석 망향제	9월	○ 내용 : 인천지구 이북도민연합회 망향대제 ○ 장소 : 수봉공원(망배단) ○ 대상 : 인천지구 이북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400명	8,000

2. 황해도민회 교류사업

단위사업명	일정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황해도민 교류사업	년 2회	○ 내용 : 연초 신년교례회 및 연말 송년의 날을 통해 피난 2세대, 3세대들이 1세대 어르신들로부터의 살아있는 반공교육을 통해 안보의식을 고취 하고 통일을 기원하는 분위기 조성 ○ 대상 : 황해도민 400여명	20,000

3. 통일안보의식 함양사업

단위사업명	일정	주요내용	소요예산 (천원)
통일촉진결의 대회 및 군부대 격려 방문	9월	○ 내용 -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의 통일 염원 - 안보의식 고취 · 통일촉진결의대회 안보강의강사 섭외 · 군부대와의 방문계획 협의 및 일정 확정 ○ 대상 : 황해도민 100여명	10,000